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10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서범수 · 김소희 · 이현승
박정하 · 추경호 · 김기웅
신성범 · 윤재옥 · 우재준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의4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제1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체결 등에 관한 신고 의무의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량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u> <u>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u> <u>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u> <u>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u> <u>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u> <u>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u> <u>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u> <u>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u> <u>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u> <u>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u> <u>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u> <u>다.</u>
제105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관,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 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 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제105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1의3. (생략) <u><신설></u> 2. ~ 13. (생략) ③ (생략) 제11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u> 2.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⑤ -----제4항까지-----</u> ----- ----- ----- ----- ----- -----
---	---